위임전결규정

제정 1999. 10. 01	개정 2011. 09. 01	개정 2015. 08. 10
개정 2003. 09. 01	개정 2013. 09. 01	개정 2016. 02. 29
개정 2005. 06. 01	개정 2013. 12. 06	전문개정 2018. 01. 1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문서결재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사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전결사항) 각 전결권자의 위임 전결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정해진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4조**(예외사항)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것은 위임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합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상호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쌍방 부서 장의 협의를 통해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처 기획팀 3-1-3 위임전결규정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